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22일 ~ 11월 26일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5건(본처분 3건, 현지처분 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 감사결과 내역

총괄현황			처 분 현 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통보	계	추징·회수	환급·감액	훈계
5	3	2	5	2	3	-	2/522	1/522	-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 아동·가족 상담 슈퍼비전 및 상담원 사례회의

-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사례 지도를 통해 사례별 치료 목표와 전략, 바람직한 상담자 태도에 대한 점검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함양 및 상담 역량 강화
- 아동·가족문제 발생 예방 및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례 지원 방향 모색 및 상담사업 활성화 도모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6. ~ 2021. 9.
- 참여대상 : 아동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원 10명
- 사업내용
  - 상담심리전문가(수퍼바이저)를 초빙하여 상담사례에 적합한 상담목표 설정 및 체계적 사례개념화 교육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지원 방법 모색
  - 아동·가족 문제의 특성 파악을 통한 위기가족 보호방안 협의
  - 상담원간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및 건의·애로사항 수렴 등
- 소요예산 : 연간 1,991천원(수퍼비전 강사비, 행사실비)

### □ 추진실적

개 최 일	사례 발표자	수퍼바이저	참여인원
2019.06.24	정상연 박순임	채경선(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8명
2019.09.24	이인숙	채경선(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7명
2019.11.25	신승연	조은숙(상명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8명
2020.06.08	박은경	채경선(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10명
2020.08.19	김경아	권경인(광운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8명
2021.03.19	김성미	이성직(연세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7명
2021.06.22	김정은	조은숙(상명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10명
2021.09.29	채경란	채경선(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8명

※ 2020년도 상담 슈퍼비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2회만 진행되었음.

## □ 추진성과

- 상담원의 전문성 함양 및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
  - 상담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사례를 더욱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
  - 아동복지관의 상담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며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함
- 저소득·위기 아동 및 가족상담 사례 정보 교류
  - 아동복지관의 내 상담사례를 발표하며 저소득·위기 가족의 상담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사업 홍보

- 일방적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직원이 참여하는 쌍방향적인 찾아가는 홍보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아동 및 가족 심리상담·치료·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홍보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

### □ 추진방향

- 기존의 홍보물 일방 배포를 통한 아동복지관 사업 홍보 방식 지양
- 아동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

### □ 사업개요

- 홍보반 편성 : 1반 3팀 6명
- 홍보기간 : 2021. 3. ~ 12.
- 홍보 대상기관 : 관내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아동시설 등
- 홍보내용 : 아동복지관 사업 전반(심리상담·검사·치료·교육)
- 홍보방법
  - 팀별 담당기관 지정하여 방문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홍보 실시
  - 홍보 리플릿 및 전단지 제작 배포 병행으로 홍보 효율 극대화

### □ 추진실적

- 2021.03.22. : 찾아가는 홍보 운영계획 수립
- 2021.03.23. : 홍보반 편성(1반 3팀)
- 2021.03.24. : 홍보 리플릿 등 제작(리플릿 6,000매, 전단지 6,000매)
- 2021.03~11. : 130개 기관\* 방문 사업 설명 및 리플릿 배부(12,000매)

\*기초자치단체 41개소, 교육기관 40개소, 아동시설 49개소

## □ 추진성과

- 아동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아동복지관 사업 인지도 개선을 통한 기관 간 협력적·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시급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우선 추천 상담·치료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및 아동인구 감소에도 아동·가족 심리상담 인원 증가\*
  - \* (2020년) 247명 → (2021년 10월말) 422명

**수범사례 3**

**찾아가는 심리검사**

- 아동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발생을 예방
- 학습 전략을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학습 흥미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수정하고 학업이나 진로 설정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유치원: 상반기 / 초등학교: 하반기)
- 대 상 :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심리검사 희망 아동 및 보호자
- 방 법 : 심리검사를 의뢰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임상심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해석 및 아동 이해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
- 소요예산 : 9,000천원 (심리검사지 및 도구 구입 재료비)
- 검사내용

검사명	비고
KPRC(한국아동청소년인성평정척도) / IBS(부모아동상호작용행동검사)	유치원(보호자 설문지)
MLST(학습전략검사) / ITS(학습흥미검사)	초등학교 (4~6학년 자기보고 설문지)

**□ 추진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건
유치원	17	1,086	12	751	17	808	17	881
초등학교	6	144	5	93	16	312	하반기 추진	
합 계	23	1,230	17	844	33	1,120	17	881

## □ 추진성과

-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 향상
- 통계적으로 시각화된 자료(심리검사 결과지)를 통한 아동의 학습 동기 고취
- 임상심리사가 수요처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심리검사 실시: 2021. 11. ~ 12. (초등학교 대상)

2021년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 인천광역시

## 주의 요구

제 목 상담원 등 위촉 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관 계 부 서

내 용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은 아동·가족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표1] 참조), 상담원·임상심리사·아동심리치료사·가족치료사 등(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의 위촉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상담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임상심리사·치료사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상담원 등 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상담원 등 활동실적

구분	아동·가족상담	아동·가족 심리치료				아동·가족 심리검사	비고
		계	가족심리치료	아동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상담인력	9명	12명				2명 (임기제공무원)	2021.9월 현재
활동실적	2019	1,350회	376명, 3,242회	130명(42가족), 466회	197명, 2,387회	49명, 389회	257
	2020	849회	211명, 1,855회	82명(28가족), 291회	129명, 1,564회	-	71
	2021.9.	745회	243명, 1,841회	102명(32가족), 250회	141명, 1,591회	-	108

\* 미술·놀이·음악·운동·인지행동·언어 등 심리치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1. 재공고 후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부적정

상담원 등 관리 규정에서는 상담원 등의 공개모집 시 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공개 모집 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5일 이상 모집 공고기간을 두어 재공고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자격기준 적합자를 면접대상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원 등의 공개모집 시에는 공고 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면접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관에서는 재공고 시 응시인원이 0명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 응시자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2] 참조)

[표2] 재공고 후 최초 공고의 응시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한 현황

공고일	채용분야 (채용인원)	최초 공고 응시인원(성명)	재공고 응시인원(성명)	면접심사 대상자	비고
2018.11.13.	심리상담원(1명)	1명 (고**)	0명	고**	
	인지행동치료사(1명)	1명 (황**)	0명	황**	
	가족미술치료사(2명)	1명 (정**)	1명 (문**)	정**, 문**	
2019.6.3.	인지행동치료사(1명)	1명 (김**)	0명	김**	
2019.11.4.	놀이치료사(1명)	1명 (이**)	0명	이**	
2020.5.1.	심리상담원(1명)	1명 (양**)	0명	양**	
	미술치료사(1명)	1명 (김**)	0명	김**	
2020.10.27.	놀이치료사(1명)	1명 (김**)	0명	1명(김**)	
	언어치료사(1명)	1명 (고**)	0명	1명(고**)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단독 응시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상담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담원 등의 선정 시에는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상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 및 단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3] 참조)

따라서 면접심사 결과 최상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관에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 미술치료사 공개모집 시 단독 면접심사 응시자인 김\*\*을 ‘전문성 및 경력부족으로 인한 자격미달’을 사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표3] 상담원 등 관리규정의 심사방법

구 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비고
관련 규정	상담원 관리운영규정 제6조(선정방법)	점수합계가 최상위 2배수 인원을 면접대상으로 선발. 단, 응시자가 2배수 이하이거나 재공고 후에도 1인일 경우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적합자를 면접대상으로 선발	면접심사 최상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예외 및 단서 조항 없음)	
	임상심리사치료사 관리운영규정 제5조(선정방법)			
모집공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을 자체 심사하여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30점) 및 면접심사(70점) 점수를 합산하여 <u>고득점자 순으로</u> 합격자 결정  (* 예외사항 명시 없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관련 규정 미준수

상담원 등 관리 규정 제6조(선정방법) 제5항 및 제6항에는 ‘상담원의 면접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며, ‘서류심사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면접관이 채점한 자 중 최상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원 모집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1. 4. 상담원 모집공고 시부터 감사일 현재 상담원 모집

공고 시까지 운영규정과는 달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고(내부결재)하였다. ([표4] 참조)

[표4] 운영규정과 다른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합격자 결정방법		비고
운영규정	공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에서 면접심사 대상 선발</li> <li>· 면접심사: 각 면접관이 채점한 자 중 최상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li> </ul>	<p>서류심사(50점) 및 면접심사(5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p>	
	<p>서류심사(30점) 및 면접심사(7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p>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관련기관 의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것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분별력이 차별화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합격자의 능력과 자질을 재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상담원 등 관리규정의 합격결정 방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의견에 대한 판단

공정한 상담원 등 위촉을 위해서는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면접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장은

[주의] 상담원 등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응시자 심사 및 합격자를 결정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에게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관 계 부 서

내 용

## 1. 물품 불용처분 소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및 제18조(불용품의 폐기)에 의하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표 1] 불용물품 미처분 현황**

(단위:대)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보관장소	사용여부	비고
2012-05-17	-	1	자재창고	X	
2012-05-21	-	1	자재창고	X	
2012-12-03	-	1	자재창고	X	
2013-02-19	-	1	자재창고	X	
2013-02-19	-	1	자재창고	X	
2013-02-19	-	1	자재창고	X	
2013-02-28	-	1	자재창고	X	
2013-04-30	-	1	자재창고	X	
2013-04-30	-	1	자재창고	X	
2013-04-30	-	1	자재창고	X	
2011-03-23	-	1	자재창고	X	
2011-03-23	-	1	상담실	X	
2012-02-24	-	1	통신실	X	
2014-08-08	-	1	자재창고	X	내용연수미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물품 보관 소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9조(보관의 구분)에 의하면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하고,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또한 동 조례 제20조(보관책임)에 따르면 재고품은 물품출납원<sup>1)</sup>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 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동 조례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에 따르면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망실물품이 물품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다.

1)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소속기관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물품관리담당 부서의 장	물품관리담당 부서의 물품관리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관리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담당주사

**[표 2] 망실 물품 현황**

(단위 : 대)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비고
2011-03-23	-	1	
2011-03-23	-	1	
2012-01-01	-	1	
2012-01-01	-	1	
2013-08-24	-	1	
2013-08-24	-	1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미처리된 불용물품 처분 및 망실 물품 처리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관 계 부 서

내 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 업무 지침」 제27조(용역업체 보안)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정보화 용역사업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2장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p.10)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 협조 요청(정보화담당관-3093, 2021.2.19.)’ 공문을 보면, 최근 용역업체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유지보수 인원을 대상으로 주기적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관리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대책을 송부하면서 이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 발주 시 계약서(과업지시서) 상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장은

[주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계약서에 보안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